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12. 1(목) 10:00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
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72호
- 나. 제 출 자 : 이인식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2. 제안이유

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 사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바,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보험 가입(안 제3조)
- 다.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보험금 청구(안 제7조)
- 마. 보험금 지원 제외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촉진 법률」 제4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대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안 제2조(정의)
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, 제3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사용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

2) 안 제3조(보험 가입)

- 안 제3조는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
3) 안 제4조~제7조(보험회사의 선정, 보험료 납부·보장기준·청구)

-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, 보험의 보장기준,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등의 보험 지원에 따른 내용을 구성함.

4) 안 제9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

- 구청장이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에 따른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 사항의 확인 규정을 명시함.

다. 검토의견

-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향후에도 장애인등의 사용자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
<장애인 전동보장구 필요 및 소지 현황>

필요 및 소지별	전동보장구 종류별	2014		2017		2020	
		비율(%)	추정수(명)	비율(%)	추정수(명)	비율(%)	추정수(명)
필요	전동휠체어	9.5	154,581	8.5	131,512	9.1	133,193
	전동스쿠터	6.7	109,249	6.2	96,152	5.0	73,094
소지	전동휠체어	3.7	59,748	4.1	63,015	6.1	90,037
	전동스쿠터	3.2	52,456	2.6	39,578	3.6	52,510

자료 : 통계청 : 국가통계포털

- 현재 우리 구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약 450명으로 추정(기초수급자 180명, 공단급여 270명)

<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>

-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
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: 공단 고시가격의 90% 지원
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
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
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금액 100% 지원
- ※ 우리구 대상자 450여명 추정(기초수급자 180명, 공단급여 270명)
- ※ 노인, 국가유공자의 전동보장구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 없음

- 본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증가 및 불편한 보행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」(2022. 10. 15제정)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, 본 조례안과 보험 보장 등에 있어 중복 지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※ 타 자치단체 제정현황 : 5개 자치단체(서울시 조례 없음)

- ▶ 최초 제정 : 대전광역시 유성구(2020.12.)
- ▶ 양천구('21.7.), 노원구('21.11.), 경기 하남시('21.11.), 충남 보령시('21.12.)
- ▶ 입법예고 중 : 세종특별자치시, 서울시 관악구

관계법령

□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8. 12. 30.] [법률 제14891호, 2017. 9. 19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,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